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동길 의원(찬성자 : 29명)

나. 의안번호 : 제 2580 호

다. 발의일자 : 2025. 3. 31.

라. 회부일자 : 2025. 4. 2.

2. 제안이유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이 삭제되면서 ’22.1월 제정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가 자문하는 건설공사 적용 신기술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로 변경함(안 제5조 제2항제2호나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5. 04. 05.~04. 09.)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22.1.4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 제정되고 법 제14조¹⁾에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제도”가 신설되면서 법 제정 당시 부칙 규정으로 기존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²⁾에 설치되어 있던 “방재신기술 지정 제도”를 삭제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 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능) ① (생략)	제5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	2.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 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2022. 1. 4., 제정〉
- 2)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① 정부는 방재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방재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방재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재신기술로 지정·고시하고 방재신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신기술 자문 현황

- 서울시는 건설신기술의 활용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3조 및 제45조³⁾에 따라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2부시장과 부위원장인 기술심사담당관을 포함한 건설 분야 전문가 등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24.4.1.~'26.3.31.)으로 정하고 있음.
- 위원회는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2호4)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5)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 등 건설공사에 관

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2022. 1. 4. 제61조 삭제〉

- 3)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3조(정의) 제3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 8. (생략)

「제45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시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활용범위 등의 적정성 여부
 2. ~ 4. (생략)
 - ② ~ ⑥ (생략)
- 4)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
 -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 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련된 “환경신기술”, “방재신기술”, “교통신기술”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위원회 신기술 자문 실적은 '22년 2건, '23년 2건, '24년 5건으로 자세한 자문 현황 및 절차는 아래 [표]와 같음.

[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신기술 자문현황(2022년~2024년)

□ 2022년						
요청부서	공사명	공법종류	공법번호	심의내용	심의일	심의결과
물재생계획과	22년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환경신기술	제600호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적용될 공법 적정성 심의	4.5	조건부 수용
		환경신기술	제602호			
		건설신기술	제913호			
도로관리과	23년 포장도로 불량맨홀 정비공사	환경신기술	제610호	불량맨홀 정비공사 적용될 공법 적정성 심의	12.20	조건부 수용
□ 2023년						
요청부서	공사명	공법종류	공법번호	심의내용	심의일	심의결과
도로관리과	23년 포장도로 불량맨홀 정비공사	건설신기술	제951호	불량맨홀 정비공사 적용될 공법 적정성 심의	2.6	조건부 수용
물재생계획과	23년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환경신기술	제606호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적용될 공법 적정성 심의	4.4	조건부 수용
		건설신기술	제949호			
□ 2024년						
요청부서	공사명	공법종류	공법번호	심의내용	심의일	심의결과
물재생계획과	24년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환경신기술	제618호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적용될 공법 적정성 심의	3.19	조건부 수용
물재생계획과	24년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환경신기술	제620호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적용될 공법 적정성 심의	3.19	조건부 수용
기술심사담당관	제4회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 소개기술 검토	건설신기술	제902호	소개기술 현장적용성 등 자문	5.8	자문
		건설신기술	제938호			
		건설신기술	제960호			
기술심사담당관	제5회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 소개기술 검토	건설신기술	제996호	소개기술 현장적용성 등 자문	9.27	자문
		교통신기술	제60호			
기술심사담당관	제6회 신기술특허 소개의	교통신기술	제62호	소개기술 현장적용성 등	12.26	자문
기술심사담당관	제6회 신기술특허 소개의	건설신기술	제799호			

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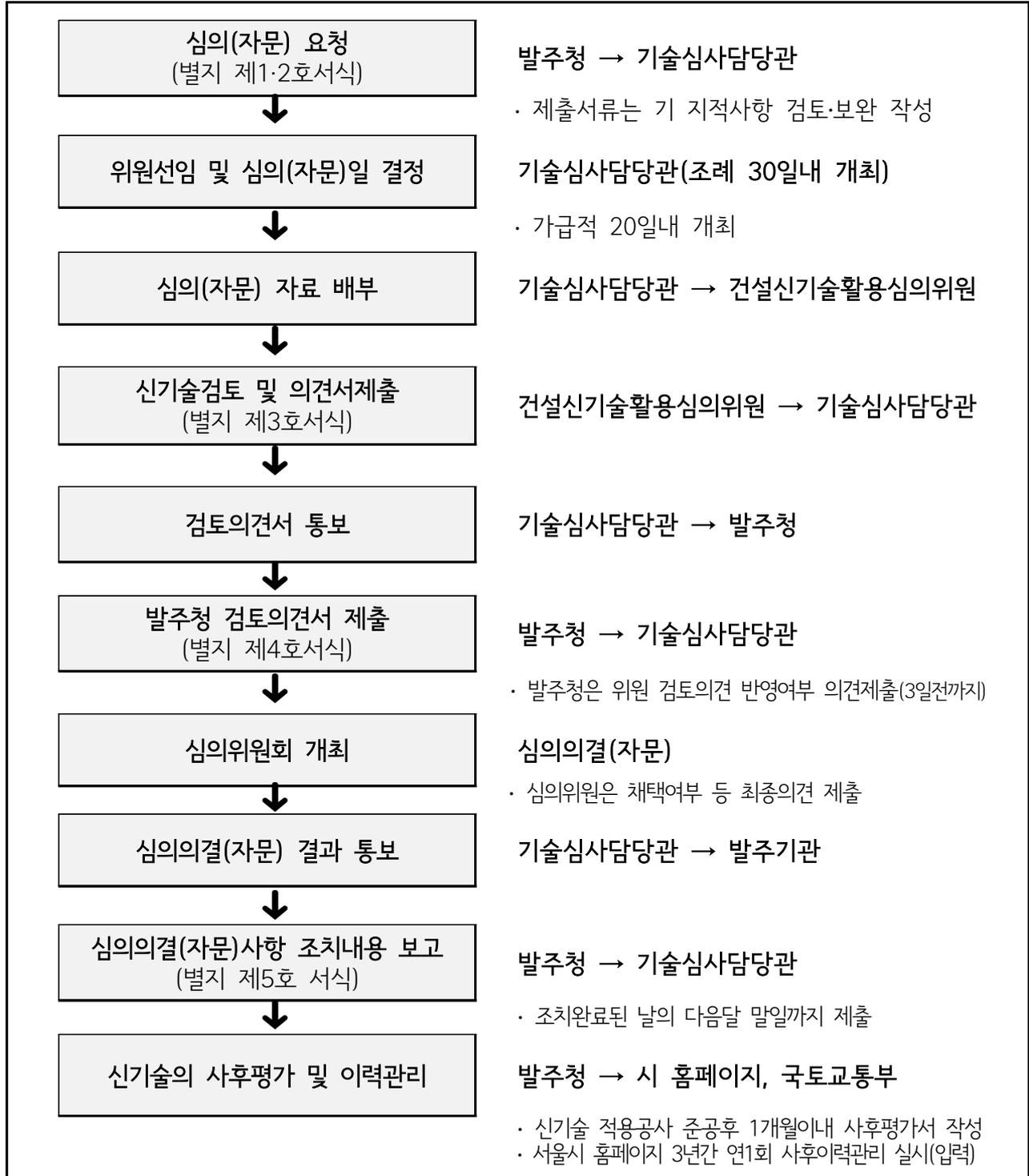
나.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장 소개기술 검토	건설신기술	제933호	자문		
	건설신기술	제986호			
	건설신기술	제990호			

[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신기술 자문 절차



■ 개정안 검토의견

- 안 제5조제2항제2호나목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⁶⁾의 자문 대상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는 '22.1.4일 국회가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 조성⁷⁾과 국민 안전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⁸⁾으로 법을 제정하면서, 기존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⁸⁾의 “방재신기술”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재난안전신기술”을 법 제14조에 신설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방재신기술”은 자연재해 피해 저감에 국한된 우수 기술로 적용 범위가 제한적⁹⁾이었으나, 법 제14조의 “재난안전신기술”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의 예방·대

6)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신기술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7)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① 정부는 방재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방재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방재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재신기술로 지정·고시하고 방재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전문 삭제 <2022. 1. 4.>

9)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비·대응·복구에 관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기술까지 포괄¹⁰⁾(
 [표] 참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자문 대상 신기술의 범
 위 또한 재난안전 전반으로 확대되어 기술 사각지대 해소와 종합
 적인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재난안전산업(기술) 분류 통합 내용

< 대분류 체계 >	
통합 이전	통합 이후
< 재난안전산업(기술) 특수분류 >	< 재난안전산업(기술) 특수분류 >
1. 안전용품 제조업 2. 안전용 기기 및 장비 제조업 3. 안전용 운송장비 제조업 4. 안전시설 건설, 설계, 감리업 5. 안전 관련 제품 도소매업 6. 안전시스템 개발 및 관리업 7. 안전관리 서비스업	
< 방재산업(기술) 특수분류 >	
1. 방재제품 제조업 2. 방재시설 건설업 3. 방재용품 도소매업 4. 방재기술 연구개발 및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5. 방재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및 협회, 단체	1. 자연재난 예방산업 2. 사회재난 예방산업 3. 재난 대응산업 4. 재난 복구산업 5. 기타 재난관련 서비스업

○ 법 부칙 제2조제2항¹¹⁾에서, 법 시행일('23.1.5.) 이전에 「자연

- 10)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 4. (생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1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부 칙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에 따른 방재기술평가 중 방재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되어 보호기간¹²⁾이 유효한 109건('25년 2월 기준)의 “방재신기술”은 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로 간주되고 있는바, 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대한 연속성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로서 보호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방재신기술은 이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신기술의 유효기간은 종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 ⑦ (생략)

1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